

Visa-Cash 표준 가맹점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품의완료후 즉시

2. 개정내용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제1조 ~ 제16조 (내용생략)</p> <p>제17조(유효기간)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자격 유효기간은 1년 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주식회사 또는 가맹점에서 탈퇴 및 자격정지 통지가 없는 한 다시 1년 간씩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</p>	<p>제1조 ~ 제16조 (좌 동)</p> <p>제17조(유효기간) <u>①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발행기관 및 브이캐시 주식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은행은 가맹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가맹점에 통지합니다</u> <u>②제①항의 통지에는 “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1년간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 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</u> <u>③가맹점이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“연장을 원하지 않음” 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.</u> <u>④제①항 내지 ③항은 제16조에 의한 가맹점 자격정지, 상실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</u></p>	<p>금융감독원약관 변경 권고사항 반영</p>
<p>제18조 ~ 제25조 (내용생략)</p>	<p>제18조 ~ 제25조 (좌 동)</p>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